

디에이치 자이 개포 대리 어은희 TEL : 02-575-1690 e-mail : eunhee9409@naver.com

문서번호 : J277-2018-011

2018.2.23(금)

수 신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참 조 : 공동주택 특별공급 담당자

제 목 :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 件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분양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제 36조에 의거 귀 기관에 ‘기관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대상자 선정 후 특별공급 명단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관추천 대상자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신청일	당첨자선정일	동·호수 발표일	비고
일자	2018.3.7(수)	2018.3.12(월)	2018.3.13(화)	2018.3.22(목)	

※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예정임.

2. 명단송부일자 : 2018.03.09(금) 18시까지

3.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단위:세대)

구분	주택형		계
	84㎡P	84㎡T	
배정세대	1	1	2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의 2배수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

4. 공동주택 가격 등 자세한 분양 자료는 2018.3.7 (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당사 분양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특별공급 안내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소장 박윤서
 (직인생략)

[별첨]

디에이치 자이 개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대상 : 의사상자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2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 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3.7(예정)]에 디에이치 자이 개포 (www.hillstate.co.kr/gaepo8)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공급대상 및 일정

- 공급대상 :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동주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 (일원동 611-1번지)
- 규모 : 지하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 중 일반공급 1,69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2세대

주택형	일반분양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비고
84P	26	1	P : 판상형
84T	322	1	T : 타워형
85㎡이하 계	1,198	2	85㎡초과 제외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의 2배수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18년 3월 7일(수)(예정)	디에이치 자이 개포 홈페이지
견본주택 오픈	2018년 3월 9일(금)(예정)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양재동)
특별공급 접수	2018년 3월 12일(월)(예정)	견본주택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7호(의사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8.3.7(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자

<청약예치 기준금액>_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3.7(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3.7(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2개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함[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의 2배수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3.7(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각 1통)

구비서류	구비조건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신청장소(건본주택)에 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단,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 로 발급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서 발급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장의 추천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인장
- ※ 본인서명사실 등록자는 대리신청 불가

4. 기타 사항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2018.3.7(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 인쇄제작물 및 디에이치 자이 개포 홈페이지 (www.hillstate.co.kr/gaepo8)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개요 및 위치도



- 공급대상 :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동주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 (일원동 611-1번지)
- 규모 :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 중 일반공급 1,690세대

주택형	일반분양 세대수	주택형	일반분양 세대수	비고
63P	26	103P	56	P : 판상형 T : 타워형
63T	162	103T	184	
76P	174	118	204	
76T	64	132	42	
84P	450	173	5	
84T	322	176	1	

6. 견본주택 위치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양재동 226번지 양재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 대표번호
02)575-1690